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103485(본소), 2021나10349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평택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길복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1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19. 선고 2021가단51766(본소),
2021가단64328(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1,840,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8.부터 2021.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4,159,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¹⁾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인정할 있다’를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G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약정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약정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망 G와 피고 사이의 연락 내용 등)도 없는 점, ② 망 G이 2002. 10. 30. 피고에게 3,0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그 돈으로 안성시 N 답 3,503㎡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 G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망 G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3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녹취록(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망 G에게 교부한 대출금의 정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을 원고, 원고의 사촌인 O나 P와 논의하였음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위 각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쳐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다만 위 녹취록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마치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말한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녹취록 외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문성, 판사 정승화

1) 반소장에는 ‘이 판결 선고일’로 기재되어 있는바, 반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선해함이 상당하다.